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01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이건태·김한규·김현정

민홍철 • 박균택 • 박홍배

이기헌 • 이원택 • 조인철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급발진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오인으로 인한 조작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페달오인으로 인해 일단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스스로 페달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띠 미착용 시발생하는 경고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이 있는 경우 경고를통해 운전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에 게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페달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가속 경고 장치의 장착)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작용력을 가속페달에 가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장착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장치의 장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한다.

제7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속 경고 장치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9조의4(가속 경고 장치의 장
	<u>착)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u>
	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렁으
	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작용력을 가속페달에 가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
	게 경고하는 장치를 장착하여
	<u>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장치의
	장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4의2.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 • 판매자등(판매
「 10 / 2間 ヨー)	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